#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한홍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967

발의연월일: 2020. 8. 14.

발 의 자 : 윤한홍 · 조경태 · 윤두현

최형두 · 추경호 · 김영식

홍준표 • 유경준 • 권성동

한무경 • 태영호 의원

(11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 물품의 반입신고, 국외로의 반출 신고, 역외작업 신고 등 여러 신고 사항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신고 민원의 처리는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데, 신고 민원의 처리절차가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아 신고인의 불편함이 야기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신고를 받은 행정관청이 신고를 받은 날부터 법률에서 정하는 기간 내에 신고 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통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를 도입하여 신고 민원의 신속한 처리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4조, 제29조, 제30조, 제34조, 제35조 및 제38조).

#### 법률 제 호

##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⑤ 관리권자는 제4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신고 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⑥ 관리권자가 제5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 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제29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7항(종 전의 제5항) 중 "제4항에도"를 "제6항에도"로 한다.

- ② 세관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2일 이내에 신고 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③ 세관장이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 수리 여부 또는 민원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

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제30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④ 세관장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신고 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⑤ 세관장이 제4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 수리 여부 또는 민원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제34조제2항 중 "신고가 이 법에 적합하게 이루어졌을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수리하여야"를 "신고를 받은 날부터 2일 이내에 신고 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제4항에"를 "제5항에"로, "제2항에"를 "제3항에"로 한다.

③ 세관장이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 수리 여부 또는 민원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제35조제1항 중 "제29조제4항을"을 "제29조제6항을"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④ 세관장은 제3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2일 이내에 신고 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⑤ 세관장이 제4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 수리 여부 또는 민원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제37조제1항 전단 중 "제29조제3항제2호"를 "제29조제5항제2호"로 한다.

제38조제4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④ 세관장은 제3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신고 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⑤ 세관장이 제4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 수리 여부 또는 민원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제40조의2제1항제1호 중 "제29조제3항에"를 "제29조제5항에"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및 제4호 중 "제29조제4항에"를 각각 "제29조제6항에" 로 한다.

제44조 전단 중 "제29조제4항제1호의"를 "제29조제6항제1호의"로 한다.

제57조제1항제1호 중 "제29조제3항을"을 "제29조제5항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제29조제4항에"를 "제29조제6항에"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제29조제5항의"를 "제29조제7항의"로 한다. 제60조제5호 중 "제38조제4항에"를 "제38조제6항에"로 한다. 제61조제1호 중 "제29조제2항에"를 "제29조제4항에"로 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제5항·제6항, 제29조제2항·제3항, 제30조제4항·제5항, 제34조제2항·제3항, 제35조제4항·제5항 및 제38조제4항·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4조(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	제14조(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
등) ① ~ ④ (생 략)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u> &lt;신 설&gt;</u>	⑤ 관리권자는 제4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
	에 신고 수리 여부를 신고인에
	게 통지하여야 한다.
<u> &lt;신 설&gt;</u>	⑥ 관리권자가 제5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 수리 여부 또
	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
	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
	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
	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
	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
	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
	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
	<u>다.</u>
제29조(물품의 반입 또는 수입)	제29조(물품의 반입 또는 수입)
① (생 략)	① (현행과 같음)
<u>&lt;신 설&gt;</u>	② 세관장은 제1항에 따른 신
	고를 받은 날부터 2일 이내에
	신고 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 설>

### <u>②</u> ~ <u>④</u> (생 략)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 제3호의 내국물품은 자유무역 지역에서 관세영역으로 반출해 서는 아니 된다.

제30조(국외로의 반출 및 수출) 제30조(국외로의 반출 및 수출) ① ~ ③ (생 략) <신 설>

<신 설>

③ 세관장이 제2항에서 정힌
기간 내에 신고 수리 여부 또
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띠
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
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
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띠
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
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긴
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
<u>다.</u>

④ ~ ⑥ (현행 제2항부터 제4 항까지와 같음)

⑦ 제6항에도----

① ~ ③ (현행과 같음)

- ④ 세관장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신고 수리 여부를 신고 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⑤ 세관장이 제4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 수리 여부 또 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

제34조(역외작업) ① (생 략)

② 세관장은 제1항에 따른 <u>신</u> 고가 이 법에 적합하게 이루어 <u>졌을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u> <u>수리하여야</u> 한다.

<신 설>

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제34조(역외작업) ① (현행과 같음)

- ② ------신 고를 받은 날부터 2일 이내에 신고 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 ③ 세관장이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 수리 여부 또 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 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 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 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 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 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 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 다.

<u>④·⑤</u> (현행 제3항 및 제4항

③ • ④ (생 략)

- ⑤ 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관세법」 제187조제6항에 따라 관세등을 징수하는 물품에 대한 과세물건 확정의 시기는 제2항에 따른 신고 수리가 있은 때로 한다.
- 제35조(역외작업 물품의 반출신 지고 등) ① 입주기업체가 역외 작업에 의하여 가공 또는 보수 된 물품을 반출장소에서 반출 장소 외의 관세영역으로 반출 하려는 경우에는 제29조제4항을 준용한다.
  - ②·③ (생 략) <신 설>

<신 설>

과 같음)
<u>⑥</u> 제5항에
<u></u> 利3
항에
<u>.</u>
제35조(역외작업 물품의 반출신
고 등) ①
<u>제29조제6항을</u>
②·③ (현행과 같음)
④ 세관장은 제3항에 따른 신
고를 받은 날부터 2일 이내에
신고 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u>통지하여야 한다.</u> ⑤ 세관장이 제4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 수리 여부 또
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
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
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
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
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

제37조(물품의 반출 등) ① 자유 기 무역지역 중 공항 또는 항만으 로서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지 역에 반입되어 수입신고되거나 장치(藏置)된 물품(제29조제3항 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물품으로서 입주기업체 가 직접 사용·소비하는 것은 제외한다)의 반출, 장치기간, 매각 등에 관하여는 「관세 법」 제157조의2·제177조제1항 제1호 및 제208조부터 제212조 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 우 「관세법」 제157조의2 중 "보세구역"은 "자유무역지역"으 로, 같은 법 제177조제1항 중 "특허보세구역" 또는 "보세창 고"는 각각 "자유무역지역"으 로 본다.

②·③ (생략) 제38조(재고 기록 등) ① ~ ③ 기 (생략)

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
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
<u>다.</u>
제37조(물품의 반출 등) ①
제29조제5항
제2호
<u>.</u>
②・③ (현행과 같음)
제38조(재고 기록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신 설>

④ (생략)

제40조의2(반입정지 등) ① 세관 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6개월의 범위에서 해당 입주기업체에 대하여 자유무역지역으로의 물품반입을 정지시킬 수 있다.

1. <u>제29조제3항에</u> 따른 수입신고 및 관세등의 납부를 하지

<u>4</u>	네관장	은 제3형	네	다른	신
고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니	레
 신고	수리	여부를	신고	1인여	] 게
 통지	하여야	한다.			

<u>(5)</u>	入	Ⅱ관	장(	ာ	제	4항	-에	서	ス	<u> 한</u>
7] 4	간	내	에	신.	卫	수:	리	여	부	또
는	민	원	처	리	관	- 련	법	렁	에	따
른	え	리	フ] る	간의	(	연정	}을	. ,	신고	1인
에 7	레	통	지ㅎ	가지	Ò	나니	하기	면	ユ	7]
<u>간(</u>	민	원	처	리	관	련	법	령	에	따
라	처	리.	기긴	<u>}</u> 0]	Ó:	현장	및	는	- ス	<u> 연</u>
<u> 장</u> 된	된_	경	우	세는	. (	해딩	}-	처i	리기	]간
을	밀	한	다)	٥]	끝	난	날	의	じ	<del>}</del> 음
<u>날</u>	케	신.	고틭	<u> </u>	구리	] 한	ゔ	0	로	본
<u>다.</u>										

세40조의2(반입정지 등	<del>(-</del> ) ①

⑥ (현행 제4항과 같음)

1.	제29	)조제	5항	에	 	 
_					 	 

- 아니하고 외국물품을 사용·소 비하기 위하여 자유무역지역 안으로 반입한 경우
- 2. <u>제29조제4항에</u> 따른 수입신 고 및 관세등의 납부를 하지 아니하고 외국물품등을 자유 무역지역에서 관세영역으로 반출한 경우
- 3. (생략)
- 4. 제35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29조제4항에 따른 역외 작업 물품의 반출신고 및 관세등의 납부의무를 위반한 경우
- 5. ~ 7. (생략)
- ②·③ (생 략)
- 제44조(자유무역지역에서 생산한 물품에 대한 관세등의 부과기 준) 제29조제4항제1호의 경우 그 반출되는 물품은 외국으로 부터 우리나라에 도착된 외국 물품으로 보아 관세등을 부과 한다. 이 경우 제29조제1항제2 호에 따른 반입신고를 하지 아니한 내국물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의 승

 2. <u>제29조제6항에</u>
 3. (현행과 같음)
4 <u>제29조제6항에</u>
5. ~ 7. (현행과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
제44조(자유무역지역에서 생산한 물품에 대한 관세등의 부과기
준) <u>제29조제6항제1호의</u>

인을 받아 원재료로 사용하였을 때에는 그 내국물품의 수량 또는 가격을 제조·가공·조립·보수한 물품의 과세표준에서 공 제한다.

제57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 기 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관세액의 10 배와 물품의 원가 중 높은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제29조제3항을 위반하여 수입신고 및 관세등의 납부를하지 아니하고 외국물품을 사용·소비하거나 자유무역지역 안으로 반입한 자
- 2. (생략)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관세법」 제2 69조·제270조 및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처벌한다.
- 1. <u>제29조제4항에</u> 따른 수입신 고 및 관세등의 납부를 하지 아니하고 외국물품등을 자유 무역지역에서 관세영역으로

제57조(벌칙) ①
1. <u>제29조제5항을</u>
2. (현행과 같음)
2. (短切开 崔吉)
<i></i>
1. 제29조제6항에

반출한 자
2. <u>제29조제5항의</u> 의무를 위반

하여 제29조제1항제3호의 내 국물품을 자유무역지역에서 관세영역으로 반출한 자

제6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 4. (생 략)
- 5. <u>제38조제4항에</u> 따른 재고 기록을 보존하지 아니한 자
- 6. (생략)
- 제6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9조제2항에 따른 내국물품 확인서를 발급받은 자
  - 2. ~ 7. (생략)

2. <u>제29조제7항의</u>
제60조(벌칙)
1. ~ 4. (현행과 같음)
5. <u>제38조제6항에</u>
6. (현행과 같음)
제61조(벌칙)
1
제29조제4항에
_
2. ~ 7. (현행과 같음)